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04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누43819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6. 4. 25. 선고 2015구합61949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10. 25.
판 결 선 고	2016. 11. 22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11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4,888,900원, 농어촌특별세 18,324,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04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"대하여"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

이 사건 회사가 2008. 7. 11.경부터 매입하여 2013. 4. 2.경 보유하고 있던 토지(장부가액은 7,911,380,000원)에 대한

○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"제1" 다음에 ", 6"을, "5호증" 다음에 "(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"를 각 추가

○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"앞서"부터 제5행 "사정"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

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,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

○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"점"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

,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던 D 소유의 [redacted] 구 J 답 1,448㎡를 실제로 담보로 제공받지도 않았던 점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'2008. 3. 4. 개인사정상(신용불량)문제가 있어 전 대표이사(D)로부터 [redacted]도 [redacted]시 I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모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1-04

직무와 권한(인사.운영.관리, 주주 등)을 위임 및 양도받아'라고 하여 자신이 2008. 3. 4.경 D으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회사의 주식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, D은 2008. 3. 4. 이후에는 사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만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고,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2013. 4. 2. 무렵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상열

판사 정봉기

판사 조용래